

<p>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됨.</p> <p>○ 개정안 제7조의 개정은 공동주택건설을 지구내 기존 건축물이 완전 철거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국·공유지인 경우는 소유 주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지구지정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며,</p> <p>제8조 제3항 중 “참작하여” 다음에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건축물의” 추가는 개선계획에서 개량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도록 하고자 한 것이며,</p> <p>제12조(변소)의 개정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용어정의가 제2조의 제5호로 신설 이향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한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p> <p>○ 개정안 제18조(건폐율) 및 제19조의(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20조(용적율) 그리고 제21조의(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대한 개정은 모법 제9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적용의 특례가 협행조례 규정의 해석상 혼동을 배제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판</p> <p>정한 것으로 인정됨.</p> <p>○ 개정안 제25조(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협행 조례에서 주차장규모를 주택 형태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통일하도록 하였으며,</p> <p>○ 제32조(토지의 매각규모등) 제2호의 개정은 비주거용건물의 신축시는 주거용 건물의 토지 매각규모와 형평을 유지되도록 규모를 조정한 것이며, 같은 조문 제2항 제3호 중 “건축법 제39조의2 제1항”을 “제49조 제1항”으로 개정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표기 정정으로 개정안이 관련법 내용과 일치한다고 사료됨.</p> <p>○ 제33조(토지의 가격산정및 매각시기)의</p>	<p>개정은 지방재정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토지의 매각시기 및 매각가격 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상 혼선이 없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p> <p>이상 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검토한 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임시조치법으로서 이법에서 타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부분적으로 타법의 적용범위를 배제하고 건축법 준용에 있어서는 이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또, 협행조례중 주차장 설치규정도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대체하면서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기간이 짧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체로 현황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으로 개정안 전체가 관련 법령에 맞고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p> <p>.....</p> <p>○ 委員長 朴泰源 지금까지 執行部의 意見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油印物을 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發言하실 委員 있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 “신축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p>
--	--

<p>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헐릴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제4조 중 “법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시장”을 “시행자”로 한다.</p> <p>제5조제1항 중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을 “주거 기능”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공동주택 건설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제3항 중 “침작하여” 다음에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건축물의”를 추가한다.</p> <p>제12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만,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로 한다.</p> <p>제19조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p> <p>제20조 중 “건축법 제48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로 한다.</p> <p>제21조 중 “규정은”을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p> <p>제25조 본문단서 중 “다음 각호의 주차대수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p> <p>제32조제1항제2호 중 “그 건축면적이하”를 “그</p>	<p>건축면적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 중 “건축물의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3조(토지의 가격산정 및 매각시기) ① 제31조에 의한 연고권자는 개선계획수립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32조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토지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별표] 중 “신축(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축건축물”로 한다.</p> <p>[별지서식] 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hr/> <p>7.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p> <p>(17時 30分)</p> <p>O委員長 朴泰源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서울市長을 代理하여 住宅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O住宅局長 梁甲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 저희가 이번에 改正하고자 하는 事由는 建築法施行令이 93年 8月 9日字로 改正됨에 따라서 條例改正이 必要한 그러한 事項과, 그간 條例 運營上 調整이 必要한 부분을 實情에 맞도록 改正해서 市民便宜 및 建築發展을 도모하고자 하는 事項들입니다.</p> <p>主要 改正內容은 첫번 째로 11層 未滿이라</p>
---	--